

#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주요정책 부문)

2024. 1

국민권익위원회

# 1. 평가개요

## (1) 중점 평가방향

### □ 국정과제 중심 평가로 성과창출 견인

-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 '정책성과·효과' 중심 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창출 독려

### □ 평가체계 합리화·환류 강화로 성과관리 강화

- 자체평가 세부 평가지표는 특정평가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특정평가-자체평가 간 연계 강화
- 전년도 자체평가 부진과제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

## (2) 평가추진 개요

### □ 평가추진 체계

- (전체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내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 및 간사(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 수행
-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과제특성 등을 고려해 2개 소위로 구성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검토·심의·조사·연구를 수행
- (성과지표 T/F) 외부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검토·평가 및 성과지표 신규개발 및 수정 지원

## □ 평가방법

- 과제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와 국민 평가결과를 종합
  - 자체평가위 소위원회별로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국민참여 정책평가(설문조사) 결과를 가점으로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제별 평가점수, 평가등급(순위) 등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및 최종 확정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3개 평가항목, 9개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주요 내용
정책설계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과제 추진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단의 적합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산출·결과 지향성, 측정가능성, 복합지표 여부 등
정책집행	1.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여부
	2. 이행 노력도	○ 투입 노력 ○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협업 노력
	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및 대응 적절성
	4.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 (부)기관장 현장방문, 정책소통, 국회설명 등 지원 정도
정책성과 및 효과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목표치 달성 정도
	2. 정책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 장기적 효과
	3. 정책환류 성과	○ '22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23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수시 정책컨설팅 실시 및 반영

## 2. 평가결과

### (1) 총 평

- '23년도 총 26개 정책부서 중 26개 정책부서의 1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등급 1개(7.1%), 2등급 2개(14.3%), 3등급 2개(14.3%), 4등급 4개(28.6%), 5등급 2개(14.3%), 6등급 2개(14.3%), 7등급 1개(7.1%)로 나타남
  - 2등급 이상 과제는 'Ⅰ-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Ⅱ-2-①.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Ⅱ-2-④. 공정채용 정착 및 법령속 부패요인 제거'이며, 6등급 이하 과제는 'Ⅰ-1-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Ⅱ-1-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Ⅱ-2-③.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 및 이행력 제고'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불편 및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음
  - 행정기관의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 2,677건을 해결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용률인 28.7%를 달성하였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집단 고충민원 177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127,734명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였음
  -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심판통합 기획단'을 출범하여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였고, 행정심판 업무 개선을 통해 신속한 재결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Easy 행정심판' 개통 확대로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였음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소통 플랫폼으로 접수된 민원·제안을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중·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완수하였음

- 이와 함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고, 새로운 공직문화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음
  - 또한,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프로그램 운영, 공공·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음
  - 부패·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켰음
- 총 14개 관리과제의 4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9.0% 수준임
  - 4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민원분석 자료 이용자 만족도, 공직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대국민 부패인식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공부문 청렴수준 향상 효과성 인식도, 이해충돌방지법 효과성 인식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미달성되었고,
    - 신고자 보호 노력도(보호사건 인용률+이행률)는 장기 미해결 사건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 인용률이 저하되어 미달성되었고,
    - 내부 공익신고자 대리신고 이용률은 전년대비 모수(내부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달성되었고,
    - 집중신고기간 신고건수 증가율은 전년도 집중신고 운영기간에 비해 공휴일이 많아져 신고건수가 목표치 만큼 증가하지 않아 미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 (2) 주요성과

- 'I-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II-2-①.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II-2-④. 공정채용 정착 및 법령속 부패요인 제거'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I-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국가 으뜸기관으로서 국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
  - (인용률 향상) 행정기관의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고충 민원 2,677건을 해결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용률 28.7% 달성
    - ※ 고충민원 인용률 : ('20) 18.5% → ('21) 21.1% → ('22) 25.7% → ('23) 28.7%
  - (집단민원 해결)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집단 고충민원 177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127,734명의 주민 숙원을 해소
  - (달리는 국민신문고) 104회 운영(지역형 40회, 맞춤형 64회), 2,264명의 국민 고충을 상담하여 1,326건을 현장에서 해결
    - ※ 현장 해결률 : ('20) 51.8% → ('21) 52.7% → ('22) 55.7% → ('23) 58.7%
- (II-2-①.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수준 확립
  - (포상금 확대) 공익신고·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2억→5억) 및 공익신고 보상 비율 확대(기존 4~20% → 4~30%)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9)
  - (보상 대상 확대)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증대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대상 확대(3.21)
- (II-2-④. 공정채용 정착 및 법령속 부패요인 제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 운영 및 법령·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전수조사)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825개 기관)를 통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 및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처분
  - (현안조사) 특혜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 발생 시(선관위 등) 신속한 현장조사 및 즉시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도모

### (3) 개선·보완 사항

- 'I-1-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II-1-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II-2-③.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 및 이행력 제고' 등 3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 (I-1-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임계치에 도달한 '민원상담 해결률' 지표 외에 '민원상담 처리기간 단축' 등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 상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 이행노력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일부 성과로 제시한 사항은 더욱 구체적인 기술 필요
  - (II-1-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외에 공직자 행위규범의 규범력을 높이는 수단의 혁신이 필요
    -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과제의 과제목표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전년대비 성과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
  - (II-2-③.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 및 이행력 제고) 신고처리 부서와 제도운영 부서의 통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
    - 제재조치 미흡기관에 대한 이행권고 이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 필요
    -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2억→5억) 관련 내용은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평가항목과 관련성이 낮으므로 상세한 설명 필요
    - 집중신고기간 신고건수 지표는 외생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체 필요

####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I-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1등급
I-1-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6등급
I-1-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3등급
I-2-①.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5등급
I-2-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4등급
I-2-③.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4등급
II-1-①. 공공부문 청렴역량 향상 지원	4등급
II-1-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7등급
II-1-③. 공직자 청렴교육 지원 강화	4등급
II-1-④. 국제·민간분야 협력 강화	5등급
II-2-①.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2등급
II-2-②. 부패·공익침해 근절을 위한 신고처리 및 점검 강화	3등급
II-2-③.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 및 이행력 제고	6등급
II-2-④. 공정채용 정착 및 법령속 부패요인 제거	2등급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국민고충 적극 해소	1등급
---	------------	-----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
  - (인용률 향상) 행정기관의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고충 민원 2,677건을 해결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용률 28.7% 달성
    - ※ 고충민원 인용률 : ('20) 18.5% → ('21) 21.1% → ('22) 25.7% → ('23) 28.7%
  - (집단민원 해결)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집단 고충민원 177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127,734명의 주민 숙원을 해소
    - ※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등을 통해 집단민원 조정건수 증가 : ('22) 33건 → ('23) 63건
  - (달리는 국민신문고) 104회 운영(지역형 40회, 맞춤형 64회), 2,264명의 국민 고충을 상담하여 1,326건을 현장에서 해결
    - ※ 현장 해결률 : ('20) 51.8% → ('21) 52.7% → ('22) 55.7% → ('23) 58.7%
  - (기업고충 해소) '기업고충 현장회의'(총 12회)를 통해 다양한 업종·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 해결
    - ※ 종로 귀금속(3.29), 여수 관광업(5.2), 동대문구 의류산업(6.23), 부산 산단(11.10) 등
  - (빈발민원 기획조사) 생활 속 빈발 고충민원 10건을 발굴, 기관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충민원 발생 선제적 예방
  - (체계적 사후관리) 권고 불수용·미이행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현장 점검, 수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행정기관의 권고 등 수용률 제고
    - ※ (상반기) 137개 지자체의 254건을 점검하여 수용 16건, 이행 96건 전환
    - (하반기) 109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의 738건을 점검하여 수용 16건, 이행 306건 전환

- **법정부 고충민원 처리역량 향상을 통해 국민 만족도 제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23년 12개가 신규 설치되어 전국 80개 지자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를 통해 지역 고충민원 3,715건 해소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지자체·교육청 대상 평가 결과 전년 대비 고충민원 분야 평균 점수(3.0점↑) 및 고충민원 만족도(1.8점↑) 상승
    - ※ '22년 고충민원 처리분야 미흡기관 58개 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23.5~6월)
- **집단민원 조정기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베테랑 조사관 5인을 포함한 집단민원 전담팀을 구성 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미해결 집단민원을 이관받아 해결(3.22~)
    - ※ 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총 66건의 미해결 집단민원을 발굴하여 15건 조정해결
  - (집단민원 조정시스템 법제화) 행정기관도 권익위에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추진
    - ※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의원실 방문 협의 6.26, 8.14, 9.8, 11.15)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집단민원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집단민원 선제적 발굴 필요**
  - 전국에 산재한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시급

- ☞ 집단고충조사팀에서 언론보도·민원동향 등 갈등 이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집단민원 선제적 발굴 기능'을 강화('24.1분기~)
- ☞ 제22대 국회 개회('24.5월) 이후 집단민원 조정 강화를 위한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령 개정 추진('24.12월)

- **시고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필요**
  - 고충민원의 성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 시고위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령 개정 추진('2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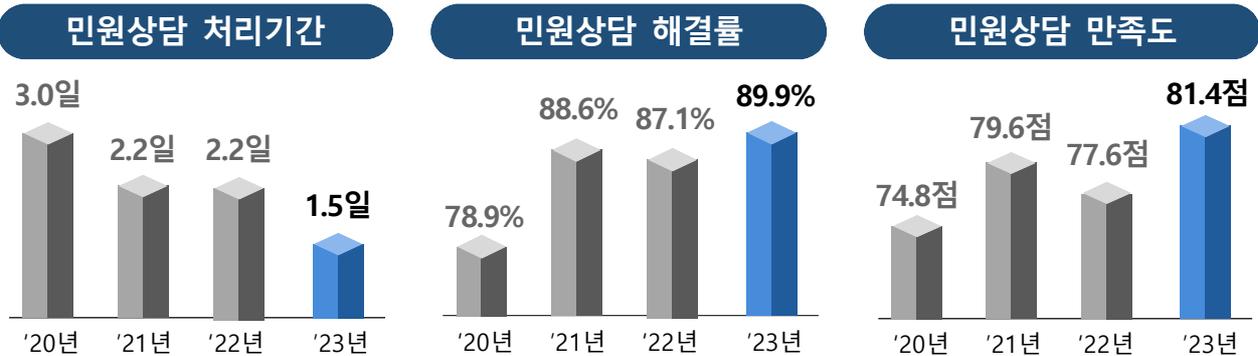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고충 인용률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은 권익구제를 위한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용률 향상이 아니라 인용률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대략적인 범위를 정하고 성과의 질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li> <li>○ 온라인 민원시대에 '지역형'은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이 집단고충민원처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li> <li>○ 약성 민원으로부터 조사관 보호를 위한 조치는 시의적절했음</li> <li>○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안 대신 조정신청권 확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환경을 생각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li> <li>○ 지속적인 실태 파악으로 시고위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민원 만족도 상승 중 불인용 건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민원해결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고충민원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li> <li>○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찾아가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지만, 운영과정에서의 타 기관과 협업체계는 원스톱 정책효과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과정으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함</li> <li>○ '22년 평가 결과 및 '23년 중간 점검 시 자체 평가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치하였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6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 '한 번에 한 곳에서' 민원상담 서비스 향상

- (민원상담 처리기간 단축) 신속 정확한 민원상담 처리로 만족도 제고  
※ 평균 처리기간 : ('20) 3.0일 → ('21) 2.2일 → ('22) 2.2일 → ('23) 1.5일
- (민원상담 해결률 향상) 상담운영 매뉴얼 마련 및 활용, 민원상담 답변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품질을 향상시키고 상담 해결률 제고  
※ 상담해결률 : ('20) 79.8% → ('21) 88.6% → ('22) 87.1% → ('23) 89.9%
- (민원상담 만족도 향상) 상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충실한 답변 유도  
※ 만족도 : ('21) 79.6점 → ('22) 77.6점 → ('23) 81.4점

## ○ 국민콜110 상담서비스 국민만족도 제고

- 전담직원 2명이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상담 건에 대한 분석·상담사 코칭(76건) 실시하는 등 적극적 상담 서비스 관리
- 상담DB 현행화 및 상담사 전문성 제고를 통해 타기관 연결없이 답변하거나 해당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등 상담 자체종결률 향상  
※ 多빈도 상담, 직접상담 가능한 문의를 분석·유형화하여 4,676건의 상담DB 보완, 상담 DB전담팀(4명)이 국민콜110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 수정·등록(총 26,548건 관리)

- 상담사 210명이 인입콜 2,552,476건 중 2,393,661건 응대, 상담응대률이 전년 93.1% 대비 0.7%p 향상
-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총 3회 진행(5~6월) 및 협약체결(6.14),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힐링교육 및 110데이, 가을 걷기 행사 등 소통행사 실시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임계치에 도달한 ‘민원상담 해결률’ 지표 외에 ‘민원상담 처리기간 단축’ 등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 상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 (성과관리 측면) 이행노력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일부 성과로 제시한 사항은 더욱 구체적인 기술 필요
  - 상담사 교육 및 인사·노무관리 내실화를 통한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주기적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홍보 활동 등은 매년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이 명확하지 않음
  - 전년과 비교한 민원상담협의회 운영성과가 없고, 콜센터 간담회, 통합콜센터 구축 협업 등을 통한 성과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콜110 인지도 제고를 통한 국민이용 활성화 필요
  - ‘23년 인지도가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되었으나, 국민콜110의 국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및 특화된 홍보를 통한 상승 추세 유지
  - ※ 국민콜110 인지도 : (‘20) 44.3점 → (‘21) 38.6점 → (‘22) 39점 → (‘23) 45.2점

☞ 인지도 취약 세대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인지 경로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방식 강구(24.1분기~)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성과지표인 '민원상담 해결률'은 상당한 진전을 이미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더 향상되기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역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민원상담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표와 복합 지표 구성을 검토해 볼 필요</li> <li>○ 상담인력이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으나 파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인지 고려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현황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설명은 자세하나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li> <li>○ 협업 건수만을 단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또는 다양화되었는지 등 성과 강조 필요</li> <li>○ 업무처리 내용과 내부 상황(노사갈등, 상담사 관리 등)에 대한 대응 노력만 기술되어 있으므로 외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추가 기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chatbot 등 AI 기술 활용 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성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li> </ul> </li> <li>○ 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대비한 노력 등도 기술 필요</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수단을 활용하였는지, 이전에 비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강조(시각화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li> </ul> </li> <li>○ '충실하게 답변'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함</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2.0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국정과제**

- (통합기획단)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의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출범(6월)
- (통합방안) 자문(2월), 토론회(3.23), 국민의견수렴(7.24~8.6), 기관현황조사(7~10월), 통합자문단\* 출범(10.11) 및 자문(10월), 학술대회(11.23)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심판통합방안 마련

\* 부문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총괄, 인사, 조세, 토지, 노동, 보상보험 6개 분과)

- (시스템 구축 예산) 한 곳에서 행정심판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 예산 168억 8,500만원 확보

※ ('24년) 시스템 구축, (~26년) 구축 완료

- (시스템 통합) 통합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중앙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이용 확대('22년 79개→'23년 85개)

## ○ 행정심판 업무 개선을 통한 재결의 신속성 제고

- (절차 개선) 처리 단계별 재결지연 원인을 분석·개선하여, '22년 대비 평균 재결기간 15.7일, 처리기간(90일) 도과 사건 비율 5.9%p 감소
- (청구권 남용 대응) 욕설·비방만 있거나 주장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답변서 없이도 재결 가능('23.3.21. 개정)

## ○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 및 사회적 약자 접근성 확대

- (Easy 행정심판 개통·확대) 몇 가지 처분정보만 입력하면 청구서가 자동 완성돼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중앙행심위 포함 51개 기관 활용 중

- (집행정지 기간 연장) 집행정지의 효력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하고 타 행심위에 확산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 (구술심리 확대) 제도 신설·개선으로 전년 대비 구술심리를 36건 더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자기주장·소명기회 부여
  - ※ 구술심리 사건 등을 심도있게 심리하기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 신설
- (부당성 판단 활성화) '부당' 관련 재결례를 유형화하고 판단범위 및 기준을 마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도 행심위에 교육 실시

○ 행정심판 제도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지도·감독) 17개 시·도 및 교육청 행심위의 운영현황 파악 및 운영편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워크숍 개최(11.30~12.1)
- (교육) 처분청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소수인력으로 운영되는 처분청·행심위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행정심판 전반의 품질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이견을 조정하여 통합대상을 확정할 필요

- 객관적인 판단기준 수립 및 의견조회 및 조정을 통해 통합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 통합기구 등을 설계할 필요

☞ 사전 기관 의견조회 및 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행정심판 통합대상 확정 필요 (24.상반기)

○ 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실 방문설명 등 적극 입법지원(24.6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기대효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적절하게 기술하였음</li> <li>○ 수혜자·이해관계 집단 및 현장의견 반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전담조직인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출범하여 효율적인 과제 수행체계를 마련하였음</li> <li>○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집행 정지 기간 연장, 구술심리 확대, 국선대리인 활성화 등을 적절히 추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여 실제로 재결기간이 목표보다 크게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li> </ul> </li> <li>○ 국선대리인 활성화 관련 행정심판법 개정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심판 단계별료(청구단계, 조사·심리단계, 재결단계) 정책성과를 적절히 분석하였음</li> <li>○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에 반대하는 기관 들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링크로 연결되기만 해도 국민의 편의성은 개선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li> <li>○ 장기적 효과들이 나열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장기적 효과와 통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기적 효과를 구분할 필요</li> </ul> </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8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답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운영의 안정화
  - (통합 확대) 신문고를 통하면 모든 행정기관과 소통 가능토록 국민신문고로의 통합 확대 추진
    - ※ 신문고 통합기관 : ('22) 1,116개 → ('23) 1,163개, 47개 기관 증가↑
  - (민원데이터 개방) 민원답변 원문공개 서비스의 품질개선으로 축적된 데이터 활용도 제고
    - ※ 국민신문고 공개 데이터 현황 : 국민신문고·이용기관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인 등 답변 원문·질의응답 데이터 공개(최근 2년치 누적 37,758건 등록, '23년말 기준)
  - (민원서비스 개선) 전년도 민원서비스 평가 부진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전년대비 국민신문고 부문 점수 4.4점 상승
- 국민참여 소통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시스템 부하 효율적 관리) '동시접속 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순간 접속자 폭증 문제 대비(5월)
  - (국민제안통합플랫폼 고도화 착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 국민소통 기능 확대
    - ※ (개편방향)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민원·제안·청원 일괄신청 및 결과 확인 기능 신설, 투표·설문 등 국민참여토론 기능 강화, 별도 서버 구축 등
- 국민생각함 운영을 통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
  - (국민의견 정책반영)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제안,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안전을 각급 행정기관이 정책에 실제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 행정 구현(38건)

- (국민패널 확대)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돌파, 설문외 대표성·신뢰성 제고 기대

※ 국민패널 가입자수 : ('21) 9,156명 → ('22) 16,199명 → ('23) 21,998명

- (국민생각함 활성화) '청소년·청년' 이외 '시니어' 계층까지 포함하여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확대 시행(3~11월)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업무수행과 직접 연동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각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였는데, 모니터단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국민생각함 등 정책협업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
- (성과관리 측면)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은 실적보고서 내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함
  - 'K-대표 온라인 국민소통창구로서의 국민신문고 기반 공고화'는 평가항목과 연관성이 낮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에 비해 민원서비스 수준이 대체적으로 미흡

☞ '24년도에 '23년도 '미흡' 기관 중 10여개 공공기관을 선정,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권익위·관리기관 합동 컨설팅 시범 실시('24.7월)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가 다수 의견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소수 의견이 부각·공유되는 방안 필요

☞ '24년 첫 출범하는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에 '국민생각함 참여 및 안전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여 모니터링 지속·확대('24.3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는 구성 및 설계상 적절했지만 업무 수행 결과와 직접 연동되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 관련 구체적 이행 노력 기술 대신 단순히 증가된 기관 숫자로만 간단히 표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성과 지표 이행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li> <li>○ 국민신문고에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기능도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홈페이지 기능 정리 및 배열 순서 등 시각적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신문고 포털 자체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지만 여전히 기능의 구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 및 구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함</li> </ul> </li> <li>○ 국민생각함 외부 협업한 기관이 중복되는 등 몇몇 기관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인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제도 개선 건수'는 건수만 제시되고 있고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 실현되었는지 목록제시가 없어서 구체적 성과를 실감하기 어려움</li> <li>○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를 어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li> <li>○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의견이 편향됨은 없는지, 다양한 관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인지 등 다양한 시각 반영을 위한 노력 필요</li> <li>○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정책반영(38건)과 국민패널을 통한 설문조사(11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 지원

- (기획분석) 중점국정과제, 포스트코로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강화, 청년 재도약 지원 등 기획분석
- (협업분석) 저출산(난임), 예비군 훈련, 소상공인 경제형벌, 자녀 양육·교육 부담 민원을 주무부처와 협업분석하여 정책·제도개선 방안 도출

예비군 훈련(7월)	난임(10월 규제혁신대표사례)	소상공인 경제형벌(10월)															
<b>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b>	<p>규제혁신 대표사례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선 권고</p> <p>개정안</p> <p>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p>	<b>민원기반 생활밀착형 규정 개선</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b>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li> <li><b>2</b>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 제공</li> <li><b>3</b> 훈련 연기 횟수 제한 폐지 한 부자가장이 동일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음</li> <li><b>4</b> 급식 지원 세부기준 마련 및 공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 참여 예비군 의견 우선 반영</li> <li><b>5</b> 연간 훈련일정 계획 사전 안내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가능 범위 15~20%로 확대 운영</li> </ol> <p>소집통지서 양식 변경, 예외 입소 허용 수요자 입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 양식 변경 전체지번 및 교통사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예외 입소 허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00000; color: white;">구성요건</th> <th style="background-color: #c00000; color: white;">기존</th> <th style="background-color: #c00000; color: white;">개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활밀착형 규정: 14개 규정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td> </tr> <tr> <td>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벌금 5백만원 이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과태료 5백만원 이하</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제13조 제2항 단서 관련)</td> </tr> <tr> <td>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벌금 3백만원 이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기존 제재 활용)</td> </tr> </tbody> </table>	구성요건	기존	개선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규정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제13조 제2항 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벌금 3백만원 이하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기존 제재 활용)
구성요건	기존	개선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규정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제13조 제2항 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벌금 3백만원 이하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기존 제재 활용)															

○ 민원빅데이터 동향 제공 및 기관 활용도 향상

- (민원예보)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대응책 마련 촉구(13회)
- (활용도 향상) 「국민의 소리」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원데이터 및 외부 언론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적시성 있는 예보체계를 운영(23.2월~)

<주요 개선사례>

- ① 초등학교 원자재값 인상 및 노조파업의 여파로 개교 이후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학생들의 안전 우려, 공사일정 공개 및 조속한 공사완료 요구(3.17)
  - \* 미공사 구간 칸막이벽 구획, 안전요원 배치, 공사시간 변경 및 잔여공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23.5.22. 학교시설 전체공사 완료(경기도 교육청)
- ② 타운하우스 사전점검에서 시공불량 및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불안 호소(6.1)
  - \* 입주자 사전방문 재실시 등으로 하자보수 추진, 사용검사로 조치 완료(용인시청)

○ **협업·개방을 통한 민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협업 확대) 빅데이터 보유기관 및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데이터의 이용 가치 제고

연계	(한국언론진흥재단) 민원·뉴스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MOU 체결('19.6.) 및 양 시스템(민원분석시스템-빅카인즈) 간 연계 API 적용
협업	(기획재정부) 경제형별 관련 법령개선을 위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협업 (포스텍)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원 데이터를 포스텍에 제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조건 연구('23.4.~'24.3.)
기술 교류	(피플인소프트, 더아이엠씨) 분석전문기업과 국민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성 강화 방안 상시 협의

- (개방 확대) 민원 데이터 공개·개방 확대 및 연계·분석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대국민 공개, 공공데이터 포털 오픈API 3종(16→19종) 추가개방('23.6월)

○ **민원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방 홍보·교육**

- (경진대회) 다양한 민원빅데이터의 분석·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개선 아이디어 도출하기 위한 민원분석 경진대회 개최
- (교육)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민원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상호 컨설팅 및 민원분석시스템 사용자 대상 데이터 분석 실무교육  
※ (컨설팅) 다산콜센터, 국회사무처, 방사청 등 (교육) 민원처리담당자 대상 4회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존 민원데이터 분석은 전국적인 단위의 시계열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필요

☞ 현재 업무여건 상 특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분석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 전문기관과 공동분석 추진('24.1월~)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AI신기술 도입 등 기술기반 강화 필요

☞ 분석시스템의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용 유도('24.2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음</li> <li>○ 과제목표-하위과제-과제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li> <li>○ 다만, 계획추진에서 미흡사항의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기술이 좀 더 잘 드러날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보강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마련 등 과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함</li> <li>○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회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상황변화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li> <li>○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이 과거와 비교해 평균 수준임</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민원 빅데이터 분석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성실하게 분석하였음. 특히, 체감도 높은 성과를 위주로 과제목표-투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음</li> <li>○ 적극행정, 지역별 분석 등 주요 사례를 통해 과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디지털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가 상승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음</li> <li>○ 각급 기관의 자체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정보시스템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기술적 통합' 및 '정책적 조율' 방안도 수립할 필요</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8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여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
  - (국민제안 정책반영 지원)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신청된 제안을 전수 점검·분석하여 정책화 적극 지원
    - ※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54,000건 중 1,200건의 우수제안 발굴하고, 정책과제 43건 선정·발표('23.12월)
  - (국민참여토론 실시)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참여토론' 5건 실시, 19만건의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검토 권고
-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으로 국정방향 핵심 구현
  - ① 윤석열정부 출범 2년차, 국민을 위한 총 30건의 제도개선 완수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4건, 불필요한 규제완화 제도개선 1건, 부패방지 제도개선 8건, 국민고충 해소 제도개선 17건 완료
    - 국정과제 조기 완수로 정권 전반기 성과 창출에 선도적 역할
      - ※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 2년→5년으로 확대(국정과제)
  - ②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건강보험료 체납 빈말민원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제한 기준 완화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악순환 고리 해소
    -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보장
      - ※ 28만명에 이르는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음식점 정보제공 강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권고('23.7월)

③ 중·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로 수산업 경영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 외국인선원 도입·고용·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외국인선원의 관리비·복지기금에 대한 집행용도 명확화, 집행내역 공개 규정 마련 등('23.9월)
-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을 규모에 따라 차등, 정비업종 규제완화
  - ※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의 규모 차이에 따라 정비요원 수를 규정,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을 '차체수리·보수도장' 자격자까지 확대('23.2월)

④ 정부예산의 투명한 사용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 ※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의 다른 목적 유용 시 제재 강화(융자 지원 배제), 광역·기초 지자체간 중복지원 제한 규정 마련 권고('23.11월)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운영으로 정부 정책개선 지원

- (국민불편 해소) 공익적 성격의 적극행정 신청 사항에 대해 권고 의견제시를 통한 신속한 정책 개선 및 조치 유도
  - ※ 국민신청 3,840건을 접수하여 그 중 228건을 의견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도개선 권고시점 뿐 아니라 권고가 이행되는 시점에 카드뉴스 및 SNS 홍보 등의 방식으로 정책홍보 강화 필요

☞ 필요시 제도개선이 실제 이행되는 시점에 변화되는 내용 등을 재홍보(상시)

- 주기적인 이행점검, 컨설팅·이행전략회의 이외에도 국회제안 등 다양한 이행확보 수단 강구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이행 과제에 대한 국회제안 등 추진 검토 ('24.11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초점을 둔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li> <li>○ 적극행정 의견제시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제시 필요</li> <li>○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지표의 상한선 도달 문제도 고려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이행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li> <li>○ 국민제안 공론화 기능 개선, 이해관계자 간담회 대폭 증가, 적극행정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이 돋보임</li> <li>○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연중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li> <li>○ 기관장 현장소통의 중요성 강조가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효과 정보 제시가 개선되었으며, 장기적 효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음</li> <li>○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로 청년세대,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지자체 재정자립, 고질적 부패요인 제거 등으로 범주화한 점이 돋보임</li> <li>○ 적극행정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는 노력들이 보이나, 정부내 인식 제고 노력과 별개로 국민 체감도 제고 노력을 연중 좀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li> <li>- 아울러 국민체감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극행정신청 통계, 인용률 추이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전략적 대응 추진
  - (중점 지수 집중 관리) 국가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0개 개별지수 중 전략적 관리 지수를 선정하여 대응 역량 집중
  - (정책홍보·소통 강화) 국제 평가기관 방문(5·9월), 주한상의 간담회, 애널리스트 정책홍보 등 한국 반부패 성과의 다각적 홍보·소통 전개
- 종합청렴도 평가 내실화 및 안정적 시행으로, 공공기관 반부패 노력 유도 등 청렴도 향상 촉진
  - (평가대상 확대) 지방의회(92개) 및 '22년도 미평가 기관(연구원 유형)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 실시 등 전년대비 평가 대상기관 확대
    - ※ ('22) 573개 → ('23) 629개 기관, 56개 기관 증가
  - (맞춤형 모형 설계)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모형, 특화모형(국공립대학 등) 및 지방의회 모형으로 구분
  - (평가지표 개선)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로 지표 전반에 대해 조정·재검토(전년 대비 25% 축소)
  - (평가 수용성 제고) 평가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기관과의 소통 확대(워크숍 안내서 등) 및 제기된 의견 적극 반영
    - ※ 기관 의견 수용률 전년 대비 **10.9%p** ↑ ('22년도 36.0% → '23년도 46.9%)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정책집행 현장과 쌍방향적 소통·협업을 통한 범정부 반부패정책 추진·협력체계 확립

- (감사관 회의) 전관특혜 등 부패 카르텔 혁파,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공정채용 정착 등 국정과제 및 당면과제 집중 논의·점검(총 6회)
- (후속조치 강화) 논의사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며 주요성과는 향후 감사관 회의에 공유
- 청렴도 저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부패방지 교육 이행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 (청렴컨설팅)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대안 제시(24개 기관, 1~9월)
    - ※ 24개 청렴도 저조기관 대상 총 446건 맞춤형 대안 제시·수용(전년 409건 대비 9% 증가)
  -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어 실질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노력 등 정책 지원 강화
    - ※ 교육 사각지대인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전년 대비 12.3%p 대폭 상승(62.7%→75.0%)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지방의회 전수 평가 및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 시행 요구
  - 감사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체 점검 등 정부 역점분야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 필요

☞ 각급기관·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하고, 이해충돌 등 지방의회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검토('24년 상반기)

-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 내 완전히 내재화되도록 관리 내실화 요구
  - 국공립대학 등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취약한 기관 대상으로 전체 평균 교육 이수율까지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24년 교육운영지침 조기 마련·공유('24.2월), 국공립대학 교육실적 별도 관리 및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 취약기관 대상 철저한 이행관리 추진('24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계획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li> <li>○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과지표를 설계하여 기관의 실질적 반부패 개선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li> </ul>
2. 정책집행 (25)	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전략관리지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내외 평가관련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홍보 노력의 강화를 통해 전략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li> <li>○ 종합청렴도 평가 시행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화된 소통 노력 등 적극적인 정책집행 이행 노력도를 보여줌</li> <li>○ 주요 사업에 대한 기관장 활동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술될 필요</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부패방지교육과 청렴컨설팅 등 정책효과의 가시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부패방지교육의 경우 의무화 이후 부진한 기관(가령, 국공립대학)에 대한 이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사유가 함께 기술될 필요</li> <li>- 청렴컨설팅의 경우, 우수사례에 대한 서술분량 및 가시성 높은 자료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li> </ul> </li> <li>○ 특정평가, 자체평가 지적사항 등의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2.0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 新 공직문화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안착·확산

- (이해충돌방지법 해석기준 정립)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법상 공직자의 신고·회피 의무 관련 **명확한 해석기준 정립·배포**  
 ※ 반부패규범해석전문가 의견수렴(4.27, 6.16, 2회), 수사·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12개 관계기관 의견수렴(5.9., 7.20., 2회)
- (이해충돌방지법령 개선안 마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비효율 유발, 통일적·실효적 관리 필요 사안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기관유형별·지역별 간담회 실시(11.21~12.15)
-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교육·홍보활동 적극 전개  
 ※ 권역별 설명회(8.31~9.22, 922개 기관 1,338명 참석), 국민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이벤트 실시(5.19~26, 2,017명 참여),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2.31) 등

## ○ 생활 속 실천규범 내재화를 위한 반부패 행위규범 확립

- (반부패 행위규범 일체점검·정비) 1,376개 공직유관단체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등 전수조사(1.5~4.29)를 통한 제도 완비  
 ※ 자체 행동강령 미제정 기관(54개, 3.9%) 및 갑질금지 규정 등 미신설 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제·개정 독려·지원을 통해 **운영기반의 조속한 구축**
- (공직자 선물 규제 합리화) 사회·경제 상황, 국민들의 소비형태 등과 유리된 선물 기준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8.30)  
 ※ 선물 가액 : (기존)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명절 15만원) → (개정) 15만원(명절 30만원)  
 선물 범위 : (기존) 물품만 가능 → (개정) 물품 + 물품·용역 상품권

- (취약부문 선제적 접근·개선) 공직자 부패·비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도 운영 실태점검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이행력 확보
- ※ 시장군수의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3~4월), 수영장 등 체육문화시설 특혜 이용(4~5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특혜·비리사건 신속중점 조사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외에 공직자 행위규범의 규범력을 높이는 수단의 혁신이 필요
  - 행위규범 강화를 위해서는 외적 통제와 함께 내적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도 개발 필요
  -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과제의 과제목표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성과관리 측면) 동일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여러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기술함으로써 과제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낮게 평가
  - 전년대비 성과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제도의 안정적·실효적 정착이 필요

☞ 국립대학, 연구기관 등 직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24.2월), 제도개선안 마련(~'24.3월),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4.4월), 개선안 반영 운영지침 등 개정(~'24.6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의 부패취약분야·기관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

☞ 청렴도 평가 저조 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24.상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방지제도 제도 안착의 필요성 및 실효적 제도운명을 위한 추진배경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음</li> <li>○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리노력 강화할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행위규범에 대한 교육은 공직에 입문할 때에 우선 실시하는 것이 중요. 규범력을 높이는 수단의 혁신이 필요해 보임</li> <li>○ '청탁금지법 개정(선물 가액 범위 조정)' 내용을 투입노력,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위기관리 노력 적절성,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등 여러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방지 해석기준 재정립' 내용도 투입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협업 노력 등 여러 항목에 중복 기술</li> </ul> </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고위공직자 엄정 대응,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자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li> <li>○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이론적 프레임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동반될 필요</li> <li>○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효과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군이 없어 정확한 성과평가를 할 수 없음</li> <li>○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성과로 제시한 것은 관리과제명인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와 상충되는 면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경제개선 효과인데, 원래 과제의 기대효과와는 맞지 않음</li> </ul> </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 교육과정 개편, 맞춤형 교육 운영 등으로 교육 효과성 제고

- (공직단계별) 고위직, 승진자, 신규자 등 공직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만족도 증가(36회, 1,942명)

교육과정(대상)	'22년		'23년	
	운영횟수	만족도	운영횟수	만족도
청렴리더십 과정(고위공직자)	16	91.4	16	<b>92.3</b>
승진자 과정(승진자)	8	91.8	10	<b>94.3</b>
신규자 과정(신규자)	10	90.6	10	<b>93.7</b>

- (기관 대상) 반부패·청렴 특강과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독창적인 형식의 방문교육 '청렴라이브(Live)' 운영 확대(67개 기관, 38,116명)

※ 수요기관 대비 운영기관 비율 : ('22) 21.7%(56/258) ⇨ ('23) : **33.5%**(67/200)

- (이러닝 운영) 역사 및 인문학, 주요 반부패 법령, 청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이러닝 운영

※ (공무원) 27개 과정(288회) 운영, 153,518명 / (공직유관단체) 5개 과정(41회) 운영, 90,036명

## ○ 강사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등 공직사회 청렴교육 기반 확대

- (강사양성 확대) 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강사 양성 확대를 추진하여 청렴강사 **1,802명** 양성('22년 대비 25.4%↑)

- (강사관리 강화) 교육 및 평가체계 개편으로 강의역량을 강화 하고, 근거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개정('23.9월)

- (교육콘텐츠 개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청렴 교육 효과성 제고

※ 대면교육용(공연형) 3종, 영상 2종, 이러닝 2개 과정 등 개발

○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렴 문화 확산

- (미래세대) 미래세대의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을 미래세대의 일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운영

※ '22년 45개교 5,175명 → '23년 57개교 7,168명

- (청년 대상) 토론학습, 북 콘서트, 공익신고자 특강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된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2회, 167명)

-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리 사회 전반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양질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5개 분야(백일장, 문학, 디자인, 캐릭터, 영상물) 공모 / 총 1,276건 접수

○ 우수한 반부패·청렴 정책 전 세계로 확산

- (다국가 연수) 초청 연수 확대 및 비대면 연수 병행 등 교육 운영 확대로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위상 강화(2회, 12개국, 70명)

- (국가별 맞춤형 연수)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등 우리 정부 아시아 ODA 중점협력국 대상 맞춤형 초청 연수 운영(2회, 2개국, 20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렴교육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고충민원·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

☞ 고충처리·제도개선·행정심판 소관 국(局)과의 협업을 통해 집합교육 과정 증설 등 권익구제 교육과정 확대 추진('24.상반기)

- 공직자, 미래세대 대비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필요

☞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인 청년인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청렴교육 참여 기회 확대('24.상반기)

- 청렴교육 수요 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필요

☞ 전임 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교육정책·학술연구, 교육과정 및 콘텐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설 추진('24.하반기)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계획의 주요 내용들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음</li> <li>○ 장기적으로 성과지표를 지금의 output에서 outcome으로 전환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역량지수 등을 개발하여 교육생들의 역량 변화를 측정하거나, 교육 및 콘텐츠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이를 성과지표로 가져갈 필요</li> </ul> </li> </ul>
2. 정책집행 (25)	2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보완, 교육 및 체험 기반 강화, 수요에 대한 즉각 대응, 네트워크 확대 등 과제 이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함</li> <li>○ 향후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전문강사의 유지 및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li> <li>○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평가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 자문단(공직자 자문단, 청년 자문단 등)을 구성 및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li> <li>○ 모니터링의 과정과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음</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함</li> <li>○ 대면교육 확대, 체험형 교육 도입 등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다만, 교육생 몰입도의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할 필요가 있음</li> <li>○ 장기적 효과의 경우 너무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장기적 효과와 함께 중기적 효과도 같이 제안하면 보다 풍성하게 제시할 수 있겠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국제 반부패 논의에 대한 주도적 참여와 성과 인정
  - (통상협정 타결)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의제 쟁점사항 검토 및 협상 참여로 협정 타결
    - ※ 권익위는 개도국 공무원 대상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반부패 정책 공유 워크숍 및 기술전수 협력사업을 제안
  - (반부패협약 이행)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로 이행점검 대응
- 한국의 반부패 성과 확산을 통해 청렴선진국 도약
  - (개도국 공유사업) UNDP와의 협업을 통해 몽골·코소보·우즈베키스탄 대상 청렴포털 공유사업 실시
  - (반부패 정책교류)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교류사업을 다각화하여 네덜란드, 베트남 등 주요 협력국과의 정책 교류사업 실시(5회)
-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 고유의 부패리스크 식별·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체계(CP) 구축 및 확산
  - (공공) 전사적 차원의 기관 고유 부패 식별 등 부패리스크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쉰 공직유관단체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6.30) 및 시범기관 운영을 통한 청렴윤리경영 지속 지원
    - ※ (1차)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6개) → (2차)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강원랜드, 국민연금공단, 서울시설공단 등 14개)까지 확대, **20개 시범기관 운영**
  - (민간) ESG경영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의 기업 자율적 대응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CP안내서 마련(초안 9.30) 및 경제단체 등 의견수렴

- (협업) 경영현장에 적합한 청렴윤리경영 CP 개발을 위해 공기업·민간 기업·법무법인·학계 등 각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소통
  - ※ 경제계(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기업(LG, 지멘스 등), 법무법인, ESG 전문가 등으로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31인) 및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벤처 기업협회 등으로 경제단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중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정책 기대효과를 거시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과제수단과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할 필요
  - 제한적 국가와의 교류를 다각적으로 변화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성과관리 측면) 이행노력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성과를 기술하고, 정책성과의 의미를 알기 쉽게 명확히 기술할 필요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 타결을 주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협정 타결의 의미·의의 등에 대한 설명 부족
  -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협업을 통한 성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모니터링 내용의 구체성 부족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도국 등에 대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교류 및 공유사업 전파, 반부패 선진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역량 증대 필요

☞ 덴마크(CPI 1위), 싱가포르(CPI 5위), 홍콩(CPI 12위) 등 유럽·아시아 청렴선진국과의 반부패 양자교류·협력을 통해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마련 (24.상반기)

- 범용 안내서 발간 외에 중소기업 및 주요 산업분야에 ESG 경영 확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CP 안내서 추가 발간 등 후속조치 필요

☞ 기업(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제약회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 및 산업별 안내서 추가발간 추진 예정(24.하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단계에서 과제수단과의 상호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시적 차원보다는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li> <li>○ 국제홍보 실적(점)이 점차 임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 관리지표로서 대체지표 모색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적 국가와의 협업 보다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다각적 형태로 국제 협력강화를 시도하는 구체적 노력 기술 필요</li> <li>○ 일하는 방식, 기존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으며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명확히 기술할 필요</li> <li>○ 국제협약 이행점검의 경우, 모니터링 내용의 구체성 부족 상세기술 필요</li> <li>○ 앞으로도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안 모색</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타결로 인하여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좀더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성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연관성이 필요하고 단순하게 협정타결을 위해 특정 부분을 기여하였다는 기술로는 부족</li> </ul> </li> <li>○ 청렴윤리경영 CP 도입관련 이행노력과 더불어 정책의 성과·효과중심으로 기술 필요</li> <li>○ 평가결과 및 중간점검 및 수시 컨설팅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치하였고 또한 연계하여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등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4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수준 확립
  - (포상금 확대) 공익신고·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2억→5억) 및 공익신고 보상 비율 확대(기존 4~20% → 4~30%)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9)
  - (보상 대상 확대)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증대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대상 확대 (3.2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신고자 보호·지원 체계의 도약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공익신고 대상 확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19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471개→490개)
    - \* 19개 법률 추가 정부안 제출(8.10.), 정무위 통과(12.14.) 법사위 계류 중
  - (내부신고자 지원 확대) 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지원 강화 및 조사·수사 단계까지 비실명 대리 범위 확대 추진
    - ※ 자문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 뿐만 아니라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 할 때에도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4.24)
  -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일원화) 위원회 소관 반부패 5개 법률간 입법시차로 발생한 신고자 보호 수준 차이 해소 방안 마련(2.17)
- 현장 중심의 적극적 보호·보상 사건 해결로 신고자를 폭넓게 보호
  - (보호) 신고자 신분보장·책임감면 등 총 358건을 처리하여 보호 제도 운영 이래 역대 최다 실적 달성
    - ※ 처리기간 장기화 등 운영상 문제점에 적극 대처, '장기 미처리 사건 전담팀' 신설 등 개선방안을 통해 장기 소요 사건 65건 해결

- (보·포상금) 신고 등을 통해 국고·지자체 등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신고자에게 총 47.7억원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 (구조금) 신고 관련 비용지출 신고자 7명에 총 1,691만원 지급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교육·홍보·협업 추진
  - (교육) 민원·감사 담당자 비밀보장의무 예방 교육(3~7, 10회), 의료진 대상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교육(7.21.복지부 협업), 맞춤형 교육 자료 배포
    - ※ 위원회 내부교육(8회), 외부기관 교육(14회), 교육자료 배포(해설서, 강의자료 등 4회)
  - (홍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터뷰, 홍보물 배포, 신고 및 보호·보상 사례 웹툰, 유튜브광고, SNS 등
    - ※ 보도자료13회, 인터뷰5회, 라디오20일, 포스터2회, SNS 31회, 웹툰3회, 유튜브30일
  - (협업) 공공-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 ▲ 공공-중앙부처(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맞춤형 교육), ▲ 공공-지자체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중앙-지방 사례 공유), ▲ 민간(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구조금 지급 항목 중 의료비 지급 금액 증액 및 구조금 사건 처리 기한 연장 규정 보완 등 지원제도 보완 필요

☞ 의료비 증액(50만원→100만원), 구조금 처리 기한 연장 가능 일수 등 세부 기준 규정 정비(24.상반기)

- 조사관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고난이도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직·인력 보강 등 필요

☞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보호사건 처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채용 및 사내 전문가 육성 강화(24.하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보호 노력도 지표에 인용률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기 미해결 사건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인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 그렇다면 인용률을 떨어뜨리는 장기미해결 사건에 들이는 노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노력도 지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li> <li>○ 내부 공익신고자 대리신고 이용률 지표와 관련하여, 이용률이 많이 높아야 좋은 것인지 등 적정 이용률 수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지표 같으며 장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가시성 있게 제시되어 있음</li> <li>○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응노력과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 및 전략들이 상세히 기술되었음</li> <li>○ 기관장 참여 또는 지원 실적에 더하여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까지 제시한 부분이 돋보임</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미해결 보호사건 처리 건수의 경우 신고자 보호의 질적 성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음</li> <li>○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라는 과제에 걸맞는 정책 효과를 선별, 항목화함으로써 여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li> <li>○ 그림과 그래프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정책 성과에 대한 가독성을 높임</li> <li>○ 당초 의도한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에 관한 기술을 통해 관리 과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8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부패·공익 신고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도 강화
  - (신고사건 적극처리) 부패·공익 신고사건을 적극적·신속하게 심사하여 전년대비 사건 이첩·송부율은 상승시키고, 평균처리기간은 단축 달성
  - ※ '23.12.기준 10,786건 접수, 부패 242건, 공익1,370건 조사처리



- (사건 사후관리 강화) 조사기관 이첩·송부 사건의 4단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3년 미회신 사건은 2건으로 전년대비 98.8% 개선
  - \* ①서면·유선점검 ②현장점검 확대 ③감사관 회의를 통한 기관 협조 요청 ④청렴도 지표 강화 등 4단계의 촘촘한 관리
- 적극적·선제적 부패 실태조사로 공직사회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를 근절
  - (공사 시설부대비 운영현황 실태조사) 공사 시설부대비를 제멋대로 쓴 14개 공공기관을 적발, 기관에 부당수령액을 환수요청하여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차단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숙박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공직자의 단순 업무상 횡령을 심도있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13명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송부하고 관련사항 제도개선 요청

-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현황 등록 여부 등 조사하여 국회의장에게 송부(12.28)하고,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과정의 미비점 보완 관련 제도개선 사항 국회전달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노력을 통한 사각지대 관리 강화

- (현장점검 확대) 공공기관의 업무관련성 검토 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추가 검증을 위해 현장 점검 기관 확대

※ '23년 30개 기관 현장 점검 실시('22년 25개 기관 대비 20%증가)

- (실태점검 결과) '2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총 42명을 적발하고, 22명에 대해 해임·고발 요구

○ 이용자가 만족하는 원스톱 반부패 디지털플랫폼 '청렴포털' 제공

- (만족도 향상) 이용자 의견청취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다각도의 개선 노력으로 만족도 지속 상향('22년 80.4점 → '23년 81.3점)

- (기능개선) 단기, 중·장기로 분류하여 시스템 개선 추진(단기)하고, 개선계획 마련(중장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입법 추진 미흡

- 정부 입법 추진 시 관계부처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의원 발의를 위한 의원실 방문 협의 등 지속 추진 노력 필요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법령정비는 '24년 총선 이후(3분기 이내)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 등 의견 개진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협의·노력(연중)

○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시,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조사 대상 확대, 전수조사 곤란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는 '23년 신규 추진하는 정책이며, 인력·예산은 중·장기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폭넓은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연중)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였고, 과제수단과 계획, 목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였음</li> <li>○ 과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li> </ul>
2. 정책집행 (25)	2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부서들이 자문과 협의,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li> <li>○ 수립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의 업무협조, 의견 수렴, 대상기관들과의 협의 수행 등 다양한 경로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li> <li>○ '23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적절히 기술하였음</li> <li>○ 모니터링 내용과 대응 노력을 적절히 기술하였음</li> <li>○ 과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부기관장인 사무처장의 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음</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사건의 적극 처리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이첩, 송부율은 높이고 평균 처리기간은 단축시켰고, 미회신 사건 수는 전년 대비 98.8% 개선되었음</li> <li>○ 적극적 신고사건 처리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연계하여 기술하였음</li> <li>○ 전년도 평가결과 및 중간점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성과를 도출하였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6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관련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 사항의 적극적 이행
  - (포상금 확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의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액을 상향(2억 → 5억)하도록 법령 개정
    - ※ 입법예고('23.8.25 ~ 10.4) → 차관회의(12.7) → 국무회의(12.7) → 공포(12.19)
  -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 범정부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사용 금액(314억원)에 대한 각급기관의 제재조치(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점검
- 공공재정 부정수급 3단계 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개선
  - (1단계 : 정기점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소행정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조치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정기점검
    - ※ '23년 상반기 점검('22년도 하반기 처분 기준) 결과, 소행정기관에서 총 829억 원의 환수(739억 원) 및 제재부가금 부과(90억 원) 처분
    - ※ '23년 하반기 점검('23년도 상반기 처분 기준) 결과, 소행정기관에서 총 618억 원의 환수(418억 원) 및 제재부가금 부과(200억 원) 처분
  - (2단계 : 후속점검) 정기점검 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 미흡기관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 권고
    - ※ 소행정기관의 '22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처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후속점검하여, 총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추가 권고
  - (3단계 : 합동점검)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 유관기관(국토부·농림부·지자체)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분야에 대해 203개 지자체에 총 101억 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이행권고

- 법령개정 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대정부 신뢰도 제고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추진) 오지급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 형사 처벌 규정 신설 등 다수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법률 개정 추진
    - ※ 국회제출(23.2.1),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3.12.14)
  - (행정규칙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23.11.28)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신고처리 부서와 제도운영 부서의 통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
  - 제재조치 미흡기관에 대한 이행권고 이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 필요
- (성과관리 측면) 평가항목에 적합한 노력 및 성과를 기술할 필요
  -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2억→5억) 관련 내용은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평가항목과 관련성이 낮으므로 상세한 설명 필요
  - 집중신고기간 신고건수 지표는 외생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체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앙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협업 확대·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지자체·교육청 대상 권역별·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 취약분야 합동점검 실시(24.하반기)

- 공공재정환수제도 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

☞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다수 발생하는 일선 지자체 위주로 컨설팅 추진(24.하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신고기간 신고건수 지표의 경우 지표의 대표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외생변수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지표이고 신고건수 증가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므로 대체지표 개발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통합관리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처리와 제도운영간 상호보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한 사례, 과제 발굴 사례 등 구체적인 효과 제시 보완 필요</li> <li>○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음</li> <li>○ 소관부처 합동으로 빈발, 취약분야의 근본적 제도 개선과 피드백을 통한 매뉴얼 보완, 교육 확대, 시스템 보완 등의 협업 노력이 적절하게 제시됨</li> <li>○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내용은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와 연계성이 낮음</li> <li>○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장의 현장방문,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음</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한 제재조치 미흡기관 이행권고의 경우 이후 패널티, 제재조치에 대한 추가 자료 보완 필요</li> <li>○ '22년 평가결과 및 '23년 중간점검시 자체평가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치하였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4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로 공정채용 기반 마련
  - (조직신설) 공공분야 공정채용 전담기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1월) 국정과제 91-1
  - (제도개선)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채용관련 공통·상세 기준 부재에 의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 마련 및 전체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3월)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 운영
  - (전수조사)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825개 기관)를 통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 및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처분
  - (현안조사) 특혜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즉시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도모
    - \*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채용 특혜의혹(5월) 관련 실태조사(6~8월),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 비리 의혹(10월) 관련 실태조사(10월)
- 채용비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 도입
  - (사규컨설팅) 공직유관단체의 자체규정 흠결에 따른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 관련 자체 규정(사규)상 법령·상위지침 위배·누락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354개 기관 대상 8,485개 항목 개선 권고
    - ※ 3년간 전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예정('23년 350개 → '24년 500개 → '25년 558개 컨설팅 목표)이며, '23년 12월 기준 354개 기관 사규 컨설팅 완료
  - (공정채용 전문교육) 공직유관단체 채용 및 감사담당자의 공정 채용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집합(983명) 및 사이버교육(4,083명) 실시

-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제거해 청렴한 법·제도 구축 지원
  - (법령개선) 1,621개의 제·개정 법령을 입안단계에서 평가해 총 158건의 개선안을 발굴·권고해 법령 속 숨은 부패 사전제거
  - (신속처리) 법령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평가로 '23년 평균 처리기간을 6.4일로 신속 검토, 국정과제·민생관련 법령은 접수단계부터 선별·집중 관리하여 신속한 제·개정 지원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지방 토착 비리 및 관행적 부패 예방
  - (대상확대) 행정·예산 및 사업추진 등 부패 유발요인이 큰 규정 위주로 17개 광역시·도(상반기) 및 61개 자치구(하반기)\*의 50,256개 자치법규 점검, 작년 대비 4배 확대점검 완료
  - (부패개선) 인사·복무, 보조금, 민간위탁·투자, 축제·행사 안전 등 24개 개선과제, 2,199건(기관당 28건, 전년대비 12%↑)의 개선사항 권고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 부재 등에 의한 일부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미흡사례 확인

☞ 감독기관의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감사권 근거 불명확 기관(전국재해구조 협회 등 18개) 파악 및 감독기관 부재기관(한국은행 등 4개)에 대해서는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센터 주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24.2~10월)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모색 필요
  - 법령 및 사규, 자치법규 등 점검 규모가 방대하고 유형별 특성 및 입법여건, 정책환경 등이 상이하어 일반 관리방식으로 점검·관리 및 이행률 제고의 효율성이 저하

☞ 사전 컨설팅 강화 등 정기 이행점검 체계 보완 및 이행률 저조 기관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 강화(상시)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관과 전수조사시 채용비리 적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li> <li>○ 공정채용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권익위에서 신규로 개발할 필요</li> </ul>
2. 정책집행 (25)	2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노력의 확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음</li> <li>○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정책 추가, 조사 대상 선정기준 강화,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마련 등 점검방식의 합리적 개선과 종결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음</li> <li>○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등 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음</li> </ul>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채용 상시 관리체계의 운영을 통해 공공 부문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2년 47건→23년 44건)</li> <li>○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관련 공통기준 마련과 행정기관 자체규정화 및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였음</li> <li>○ 1,474개의 제·개정 법령을 입안단계에서 평가해 숨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50,256개의 자치법규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발굴·권고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li> </ul>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6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①	○ 집단민원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발굴 필요	○ 집단고충조사팀에서 언론보도·민원동향 등 갈등 이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집단민원 선제적 발굴 기능'을 강화 ('24.1분기~) ○ 제22대 국회 개회('24.5월) 이후 집단민원 조정 강화를 위한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령 개정 추진('24.12월)
	○ 시고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 필요	○ 시고위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령 개정 추진('24.12월)
I-1-②	○ 국민콜110 인지도 제고를 통한 국민 이용 활성화 필요	○ 인지도 취약 세대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인지 경로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방식 강구('24.1분기~)
I-1-③	○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이견을 조정하여 통합 대상을 확정할 필요	○ 사전 기관 의견조희 및 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행정심판 통합대상 확정 필요 ('24.상반기)
	○ 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실 방문설명 등 적극 입법지원('24.6월)
I-2-①	○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에 비해 민원서비스 수준이 대체적으로 미흡	○ '24년도에 '23년도 '미흡' 기관 중 10여개 공공기관을 선정,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권익위·관리기관 합동 컨설팅 시범 실시('24.7월)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가 다수 의견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소수 의견이 부각·공유되는 방안 필요	○ '24년 첫 출범하는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에 '국민생각함 참여 및 안전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여 모니터링 지속·확대('24.3월)
I-2-②	○ 민원데이터와 지리정보 융복합 분석을 통해 지역문제 해소에 활용	○ 현재 업무여건 상 특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분석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 전문기관과 공동분석 추진('24.1월~)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시신기술 도입 등 기술기반 강화 필요	○ 분석시스템의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용 유도('24.2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2-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권고시점 뿐 아니라 권고가 이행되는 시점에 카드뉴스 및 SNS 홍보 등의 방식으로 정책홍보 강화 필요</li> <li>○ 주기적인 이행점검, 컨설팅·이행전략 회의 이외에도 국회제안 등 다양한 이행확보 수단 강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제도개선이 실제 이행되는 시점에 변화되는 내용 등을 재홍보 (상시)</li> <li>○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이행 과제에 대한 국회제안 등 추진 검토('24.11월)</li> </ul>
II-1-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지방의회 전수 평가 및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 시행 요구</li> <li>○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 내 완전히 내재화되도록 관리 내실화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기관·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하고, 이해충돌 등 지방의회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검토('24년 상반기)</li> <li>○ '24년 교육운영지침 조기 마련·공유 ('24.2월)</li> <li>○ 국공립대학 교육실적 별도 관리 및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 취약기관 대상 철저한 이행관리 추진('24년~)</li> </ul>
II-1-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제도의 안정적·실효적 정착이 필요</li> <li>○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분야기관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 연구기관 등 직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24.2월)</li> <li>○ 제도개선안 마련(~'24.3월)</li> <li>○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4.4월)</li> <li>○ 개선안 반영 운영지침 등 개정 (~'24.6월)</li> <li>○ 청렴도 평가 저조 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24.상반기)</li> </ul>
II-1-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교육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고충 민원·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li> <li>○ 공직자, 미래세대 대비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필요</li> <li>○ 청렴교육 수요 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처리·제도개선·행정심판 소관 국(局)과의 협업을 통해 집합교육 과정 증설 등 권익구제 교육과정 확대 추진 ('24.상반기)</li> <li>○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인 청년인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청렴교육 참여 기회 확대('24.상반기)</li> <li>○ 전임 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교육정책·학술 연구, 교육과정 및 콘텐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여 신설 추진('24.하반기)</li> </ul>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I-1-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등에 대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 교류 및 공유사업 전파, 반부패 선진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역량 증대 필요</li> <li>○ 범용 안내서 발간 외에 중소기업 및 주요 산업분야에 ESG 경영 확산,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CP 안내서 추가 발간 등 후속조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CPI 1위), 싱가포르(CPI 5위), 홍콩(CPI 12위) 등 유럽·아시아 청렴 선진국과의 반부패 양자교류·협력을 통해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마련('24.상반기)</li> <li>○ 기업(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제약회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 및 산업별 안내서 추가발간 추진 예정('24.하반기)</li> </ul>
II-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금 지급 항목 중 의료비 지급 금액 증액 및 구조금 사건 처리기한 연장 규정 보완 등 지원제도 보완 필요</li> <li>○ 조사관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고난이도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직인력 보강 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증액(50만원→100만원), 구조금 처리 기한 연장 가능 일수 등 세부 기준 규정 정비('24.상반기)</li> <li>○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보호사건 처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채용 및 사내 전문가 육성 강화('24.하반기)</li> </ul>
II-2-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입법 추진 미흡</li> <li>○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시,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조사 대상 확대, 전수조사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법령정비는 '24년 총선 이후(3분기 이내)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 등 의견 개진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협의·노력(연중)</li> <li>○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조사는 '23년 신규 추진하는 정책이며, 인력·예산은 중·장기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폭넓은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연중)</li> </ul>
II-2-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협업 확대·강화 방안 모색 필요</li> <li>○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컨설팅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교육청 대상 권역별·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 취약분야 합동점검 실시('24.하반기)</li> <li>○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다수 발생하는 일선 지자체 위주로 컨설팅 추진('24.하반기)</li> </ul>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Ⅱ-2-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 부재 등에 의한 일부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미흡사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기관의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감사권 근거 불명확 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8개) 파악 및 감독기관 부재기관(한국은행 등 4개)에 대해서는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센터 주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24.2~10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모색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컨설팅 강화 등 정기 이행점검 체계 보완 및 이행률 저조 기관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 강화(상시)</li> </ul>